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전문경력관 응시요건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(안 제 20조제1항부터 제4항)

별도 운영 중인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으로 통합

나. 경력 응시요건 구분 명확화(안 별표1)

공무원과 민간 경력요건 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도록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전단 중 “규정 제18조,”를 “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·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과평가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거쳐 처리한다. 다만, 이 경우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규정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직급별”은 “동일 직무분야 및 직위군별 또는 직위군별”로 본다.
2.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4항 중 “직급별 또는 계급별”은 “동일 직무분야 및 직위군별 또는 직위군별”로 본다.

별표 1의 1.의 응시요건란 제1호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 공무원으로”로 하고, 같은 표 1.의 응시요건란 제1호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 공무원으로”로 하며, 같은 표 1.의 응시요건란 제1호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 공무원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근무성적의 평정) ① (생략)	제20조(근무성적의 평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(같은 규정 제18조,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 <u>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 단위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	② ----- ----- <u>규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></u>
<u><신 설></u>	③ <u>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 접수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·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과평가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거쳐 처리한다. 다만, 이 경우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규정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

	1. <u>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2항</u> <u>및 제3항 중 “직급별”은 “동일</u> <u>직무분야 및 직위군별 또는</u> <u>직위군별”로 본다.</u> 2. <u>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4항</u> <u>중 “직급별 또는 계급별”은</u> <u>“동일 직무분야 및 직위군별</u> <u>또는 직위군별”로 본다.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7